

도수치료 시행시 진료기록 요령

신경외과 전문의

현 대한도수의학회 총무부회장

현 대한응용근신경학회 회장

현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기획 이사

현 대한신경통증학회 연구이사

현 Diplomet International Board of Applied Kinesiology(DIBAK, 응용근신경학 국제 전문의)

현 Board of Certified Teacher(BCT, 응용근신경학 국제 공인 강사)

현 부천현병원 원장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법

- 의료행위
- 기록열람
- 진료기록부
- 비급여 진료비용
 - 의료광고
 - 의료기사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법

- **의료행위**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판례)
- **의료법 제2조(의료인)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11(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
 - 환자로부터 받는 동의서 :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환자에게 서면 및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
 - 서면의 경우 : 2년간 보존 · 관리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법

- 기록열람
 - 제21조(기록 열람 등)
 - 진료 기록에 관한 내용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거부 X)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사본발급 X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가 할 수 있음
 - 다른 의료인이 진료한 진료기록 --> 진료기록을 근거로 열람, 사본발급 O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 법

- 기록열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관련서류
 -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 친족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 대리인 (보험사 직원 등)
 - ①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
 -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법

- 진료기록부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①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 ② 진료기록부등 보존 (10년, 필요시 1회 연장)
- ③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 수정 X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법

- 진료기록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 인적 사항 (주소 · 성명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등)
 - 주된 증상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 · 가족력(家族歷))
 - 진단 결과 or 진단명
 - **진료 경과 (환자 치료 중 변동사항 발생시)** 보험사와 분쟁시
 - 치료 내용 (주사, 투약, 처치 등)
 - 진료 일시
 - 가능한 **한글**로 기록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법

- 비급여 진료비용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접수창구 등)

- ②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 게시

- ③ 고지 ·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홈페이지 : 따로 표시)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 법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
- 고지대상 : 별표2, 수가책에 나와 있는 비급여 대상, 치료재료, 약제 비급여 목록,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 외국인 환자는 예외
- 진료 전 설명 의무 : 설명대상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 사전 설명의 주체(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 별표2)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 행위료, 치료 재료대, 약제비, 제증명 수수료)
-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별표2의 개정 서식은 4월 1일부터 시행 (과태료 200만원)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법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별표2)
 - 고지 양식

대분류

종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 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제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 고지 작성 원칙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 법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공개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제출)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법

- 의료광고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의료광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의료광고 X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광고 --> 심의

도수 치료와 관련된 의료 관계법

- 의료광고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의료광고 X
 -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의 광고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각종 상장 ·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 보증 ·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도수 차트

성명:

남 / 여 나이:

차트번호 :

초진일: 2020년 월 일

주증상 :					
PS시행 see : Yes / No Sat : 1, 2, 3, 4, 5					
SB see : Yes / No Sat : 1, 2, 3, 4, 5					
RPD / LPD					
지병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천식, COPD,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병, 뇌졸증, 파킨슨병, 치매, 신부전, 골다공증, 암(), 기타()					
약부작용 및 알러지 () 음주(), 흡연()					
운동 () 직업 :					
기타 :					

Cervical Part	
Maigne's test	(/)
Foraminal compression test	(/)
Jackson compression test	(/)
Shoulder Depression test	(/)
Cervical Distraction test	(/)

Lumbar & Pelvic & Hip	
Minor's sign	(/)
SLR test	(/)
Fabere patrick test	(/)
Hibb's test	(/)
Piriformis comp. test	(/)
Glu. Med. Comp. test	(/)
SI joint Com. test	(/)
Jump test	L1/L2/L3/L4/L5

X-ray	
Cervical	
AP open mouth view	() Rz() () Tx()
AP	() Rz() () Rx()
Lateral	() Rx() () Tz()
Stress angle	
George's line	Normal Abnormal

Lumbosacral	
AP	() Rz() () Tx()
Lateral	() Rx() () Tz()
Stress angle	
Gravity line	+ Tz Neutral - Tz

+Rx	+Rz	-Rz	+Rz
-Rz	+Ry	-Ry	
+Ry		-Rx	
		Lt side down	Rt side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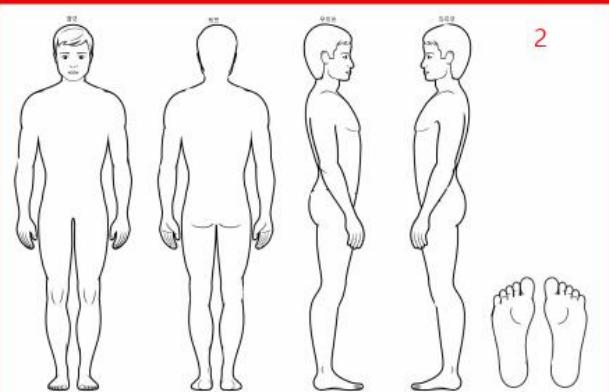
(Cervical / Lumbar)

도수챠트 작성법

성명: 1 남 / 여 나이:

챠트번호 :

초진일: 2020년 월 일



주증상 :

4

PSA시행

see : Yes / No
Sat : 1, 2, 3, 4, 5

SB

see : Yes / No
Sat : 1, 2, 3, 4, 5

RPD / LPD

지병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천식, COPD,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병,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신부전, 골다공증, 암(), 기타(), 6

약부작용 및 알러지 ()
음주(), 흡연(), 7

우도(), 8

직업 : 8

기타 : 8



10

Cervical Part

Maigne's test	(/)	11
Foraminal compression test	(/)	
Jackson compression test	(/)	
Shoulder Depression test	(/)	
Cervical Distraction test	(/)	

Lumbar & Pelvic & 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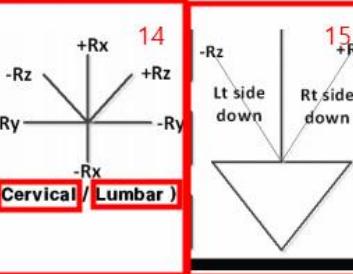
Minor's sign	(/)	12
SLR test	(/)	
Fabere patrick test	(/)	
Hibb's test	(/)	
Piriformis comp. test	(/)	
Glu. Med. Comp. test	(/)	
SI joint Com. test	(/)	
Jump test	L1/L2/L3/L4/L5	

X-ray
Cervical

AP open mouth view	() Rz() () Tx()	
AP	() Rz() () Rx()	
Lateral	() Rx() () Tz()	
Stress angle		
George's line	Normal	Abnormal

Lumbosacral

AP	() Rx() () Tx()		
Lateral	() Rx() () Tz()		
Stress angle			
Gravity line	+ Tz	Neutral	- Tz



1. 기초자료 입력

2. 환자가 자신의 아픈 부위를 표시

3. VAS 기록

4. 주증상(Chief Complaint :C.C) 기록

5. 스크리닝 검사 (PainBot/ Pain Sign Board/
환자의 설명 만족도/족지분석(RPD/LPD)

6. 지병 기록

7. 부작용이나 알러지 등 기록

8. 직업 기록 : 질병의 원인 / 경과 등에 밀접한 관계

9. 의사가 진료 내용 표시

10.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 / 검사 / 결과 / 치료 계획 등 기록

11. 경추 Physical examination 5가지 결과 표시

12. 요추부와 골반 Physical examination 8가지 결과 표시

13. 경추부 / 요천추부 방사선 검사 시행 후 결과 기록/ Axis(축)의 이론에 입각한 Listing

14. 경추부/요추부 Range of Motion 표시

15. FST Setting 잡는 기준 표시

16. 성과 관리

도수차트 작성시 주의 사항

- 상병코드 : M99 분절또는 신체의 기능장애
- ROM, tenderness 기록(내용 카피는 지양)
- 자보환자의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법과 시행자, 치료 부위, 환자 평가** 등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20년 12월 1일부터 적용권장-심평원 홈페이지)
- X-ray 추적 검사와 기록
- 운동치료는 도수치료가 아니다.
- 반복된 붙여넣기 의무기록 불인정

도수치료 관련 소견서 작성 방법

- 소견서 양식 : 특별한 규정은 없다
- 기본 형식
 - 주증상 (Chief Complaint : C.C)
 - 진단결과 (추정 또는 확진)
 - 진료경과 기록: 날자 별 정리
 - 진찰 및 검사로 밝혀진 원인 ?
 - 치료의 필요성 및 효과 „논문 리스트 작성 기록
- 작성시 참고 사항
 -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횟수
 - 진료 경과 기록을 근거로 작성
 - 경과 기록은 정확하고 자세한 이학적 검사 및 객관적 검사를 통하여 기록으로 남길 것
 - 처음부터 초진 시 검사 후 지속적 치료만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최소한 2~3주에 1회 씩 중간 검사를 실시할 것 권장
 - 치료 횟수 mild 10회,, moderate 15~20회, severe 20~30회.... Mild, moderate, severe 기준
 - 병의원에 갖추고 있는 검사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록 남기기 (VAS, PainBot, X-ray , CT, ROM, MRI, Thermography, HRV etc)

도수챠트 작성시 주의 사항

- 상병코드 : M99 분절또는 신체의 기능장애
- ROM, tenderness 기록
- 자보환자의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법과 시행자, 치료 부위, 환자 평가** 등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20년 12월 1일부터 적용권장-심평원 홈페이지)
- X-ray 혹은 DITI 추적 검사와 기록
- 운동치료는 도수치료가 아니다.(챠트 작성시 주의)
- 반복된 붙여넣기 의무기록 불인정

꼭 넣어주면 좋은 내용

(기법과 시행자, 치료 부위, 환자 평가)

- 경추와 요추부위의 통증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시행함
- 도수치료의 주체 : 의사의 감독하 물리치료사, 의사단독치료 병행
- 도수치료의 방법 : 연부조직 이완술, 액티베이터건, 응용근신경학
- 도수치료의 횟수 : 총 15회 이내 종결후 필요시 재평가후 시행

ROM

- Flexion 140
 - Extension 10
 - Abduction 90
 - Adduction 20
 - Internal rotation 30
 - External rotation 30
-
- Empty can test (-)
 - AC joint tenderness(-)

도수치료 관련 동의서 작성법

홍길동 의원 치료 동의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본인은 홍길동 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래 열거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이 동의한 아래 체크된 진단 및 치료 받기를 동의합니다.
- 홍길동의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진료 안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개인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챠트번호: 나이: 성별: 남, 여

주 증상: 동의인:)서명)

날자: 2021년 월 일

치료항목

- 도수(교정치료)
- 증식주사(프롤로주사)
- 체외충격파 치료
- IMS (근육내자극치료)
- 영양 수액치료 (IVNT) : 실손의료보험 안됨
- 기타 ()

진단항목

- 심박 변이도검사 (HRV) 자율신경검사
- 적외선 체열검사
- MRI
- 기타 ()

홍길동의원 원장 귀하

도수치료 관련 동의서 작성법

홍길동 의원 치료 동의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본인은 홍길동 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래 열거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이 동의한 아래 체크된 진단 및 치료 받기를 동의합니다.

○ 홍길동의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진료 안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개인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차트번호: 나이: 성별: 남, 여
주 증상: 3

동의인: 4) 서명)

날짜: 2020년 월 일

치료항목	5
<input type="checkbox"/> 도수(교정치료) <input type="checkbox"/> 증식주사(프롬로주사) <input type="checkbox"/> 체외충격파 치료 <input type="checkbox"/> IMS (근육내자극치료) <input type="checkbox"/> 영양 수액치료 (IVNT) : <u>실손의료보험</u> 안됨 <input type="checkbox"/> 기타()	
진단항목	6
<input type="checkbox"/> 심박 변이도검사 (HRV) 자율신경검사 <input type="checkbox"/> 적외선 체열검사 <input type="checkbox"/> MRI <input type="checkbox"/> 기타()	

홍길동의원 원장 귀하

- 비급여 진단, 치료에 대한 동의 사항 체크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체크
- 기본 정보 입력
- 환자 자신 직접 서명란
- 환자에게 실시할 비급여 치료 항목 체크란, IVNT 는 비급여이지만 실비 안되는 사항을 반드시 고지
- 환자에게 실시할 진단방법 항목 체크

조직은 8주가 지나야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4. 상기 환자 상태를 종합할 때 인정 가능한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요?

본 건은 2020.03.13. ~ 2021.08.07. 기간 동안에 어깨와 팔꿈치의 두 개의 부위에 대하여 도수 치료 29회, 체외충격파 치료 39회, 증식 치료 11회를 시행하였습니다.

1) 도수 치료에 대하여;

최근에 발표된 여러 연구 논문들과 대한도수의학회의 권고안에서는 견관절을 포함한 체간에서는 주 3회 기준, 4주간 총 12회까지, 무릎 등의 사지에 대해서는 주 3회, 2주 총 6회를 적절한 치료 횟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수 치료는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와 효과의 차이가 없는 일차적 치료이며, 다른 물리 치료와 같이 병행한다고 하여도 치료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 발표에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장기간의 도수 치료를 받아도 치료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가 제통을 위한 치료로써 주치의가 도수 치료를 고집한다면, 본 건의 경우는 2 부위에서 29회의 도수 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상기 기준에 따라서 체간과 사지의 합계인 총 18회 (=12회 + 6회)까지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2)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하여;

체외충격파 치료 자극의 횟수는 고에너지 사용할수록 적을 수 있으나, 통상 1,000 ~ 6,300번을 시행하며, 그 빈도는 적어도 3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을 권장하며, 주로 1~2주 간격으로 총 3회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Han JY, Park SB, Kim IG et al, Clinical application of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Clinical Pain 2011; 10:103-109, Rompe JD, Decking J, Schoellner C, Nafe B. Shock wave application for chronic plantar fasciitis in running atheletes. A prospective,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Am J Sports Med. 2003; 31:268-275).

제도권으로 흡수된 체외충격파 치료는 2017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신설되었는데, 인정 기준으로 가관절, 골절 자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죽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견,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 어깨의 건초염 및 활액낭염 등이 발생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정해서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활의학과/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이상 실시한 경우 주 1회 산정

도수의학회 답변

- 대한도수의학회 문의결과 권고안에는 위의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 그리고 대응으로 사내 자문의가 실제로 도수치료를 하는 분인지 단지 통증관련 학과의 의사인지를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 공정한 판정을 위해 대한도수의학회에 자문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단독법 제정 요구하는 물리치료사들..."의사에게 지도 받은 적 없다"

'의사 지도' 때문에 물리치료 저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 승인 2019.07.10 14:03 | 💬 댓글 6

물리치료사협회, 국회 토론회서 "의사 지도권 돈 때문에 포기 안 해" 망말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촉구...보건복지부 "사회적 협의 필요" 일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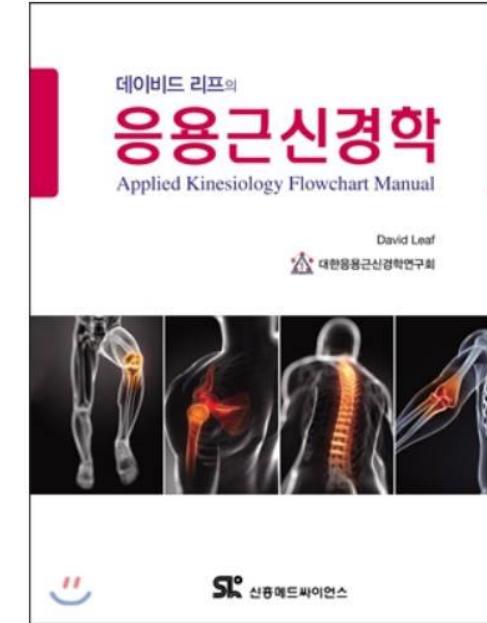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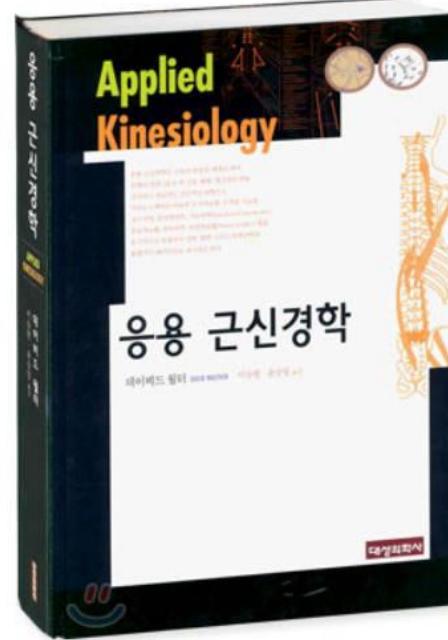
10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 ©의협신문

- 물리치료사협회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의사들이 (국민 건강권과 관계없이)돈 때문에 지도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이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회장은 "지금도 의사는 처방만 낼 뿐 물리치료 현장에서 지도하지 않고 있다. 물리치료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발의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1998년 11월 14일에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로부터 의정 65507-908의 문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권해석 답변

문의 사항

- <http://www.a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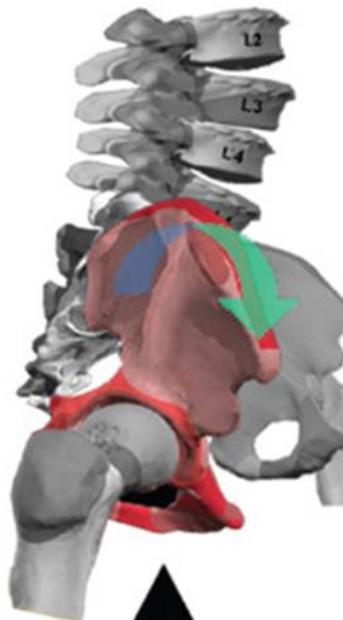


오늘 배워서 내일 쓰는
도수 의학 전동 액티베이터건 테크닉

제자장현동



고맙습



R